

제 13 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 13.1 조 목적

무역관계에 있어 자유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 금지, 경쟁정책의 이행 및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양해한다.

제 13.2 조 이행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투명성, 시의 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규정된 모든 면제가 투명하고 공공정책 또는 공익을 근거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제 13.3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자국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각각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보, 협의, 기술 지원 및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한다.
3.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그 당사국의 중요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관련 경쟁당국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3.4 조 13-1

통보

1.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영어로 통보한다.
2.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통보는 집행 활동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제 13.5 조 협의

1.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각 당사국이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 유지 및 집행할 자율권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 13.6 조 기술지원

양 당사국은 경험 교환,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경쟁 문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

제 13.7 조 비밀유지

1.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각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 및 기준과 양립가능해야 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3.8 조 13-2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협의, 기술지원 및 자국의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해가 영향을 받는 적절한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당국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 이해관계에 합치되게, 자국 소비자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3.9 조 공기업과 지정독점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 및/또는 지정 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그들 각각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반경쟁적 관행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은 공기업 및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13.10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3.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그 개정 사항,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1959년의 법률 제155호, 2009년의 법률 제1340호 및 1992년의 포고령 제2153호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헌법 제78조와 제333조, 1982년의 포고령 제3466호(소비자보호법)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

반경쟁적 관행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영업 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

가. 경쟁의 방해,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 간 합의 및 기업단체의 결정

나. 하나 이상의 기업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다. 특히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현저히 방해 하는 기업 합병 또는 다른 구조적 결합, 그리고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상공업감독원**, **금융감독원** 및 특정 사안의 경우 **민간항공 특별행정단**,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